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의자
제 85 호	제 28 차	1989. 12. 7	홍재 김 건

의안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 7조

제의취지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1704

36 / 45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 7조

① ( 생 략 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등 발할 수 있다.

④-⑥ ( 생 략 )

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개정(안)

현 형	개 정 (안)	비 고
<p>제 1조-제 2조 ( 생략 )</p> <p>제 3조(여신의 금지) 금융기관이 &lt;별표&gt;의 "여신 금지부문"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.</p> <p>다만,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여신과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인정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</p> <p align="center">(여신 금지부문)</p>	<p>제 1조-제 2조 ( 현 형 과 같 음 )</p> <p>제 3조(여신의 금지) 금융기관이 &lt;별표&gt;의 "여신금지부문"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.</p> <p>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여신</li> <li>2.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인정하는 여신</li> <li>3. 정부의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"주택건설촉진법"에 의거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</li> </ol>	<p>- 정부의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여신 금지대상에서 제외</p>
<p>제 4조-제 17조 ( 생략 )</p> <p align="center">(여신 금지부문)</p>	<p>제 4조-제 12조 ( 현 형 과 같 음 )</p> <p align="center">부 칙</p> <p>이 규정은 1989. 12. 8. 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시행일자 명시</p>